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1책형】

【문36】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③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 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상 335조의2. ②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은 그 성질이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청구권자가 매수(매도)청구를 하면(즉 매수나 매도 청구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374조의2 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1. 4. 28. 2010다 94953). ③ 비송 72조 1항. ④ 이 사건에서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비송 86조의2 2항). 이 사건 신청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개별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는데 주식매수가액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비송 86조의2 3항, 86조 4항.

【문37】 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등기된 상호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상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1547호 4조 2항). ② 등기예규 1547호 5조. ③ 등기예규 1547호 7조 2항. ④ 회사의 경우에는 상속이 있을 수 없으므로 상호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등 37조 2항). ⑤ 상등규 80조 1항.

【문38】 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등기와 달리 각 관할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 ②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에 의하여 세무법인에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세무법인의 관할 등기소는 유한회사의 관할 등기소와 다르다.
- ③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만 그 주소를 등기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하지 않는다.
- ④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 ⑤ 등기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그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수행하고, 설립허가 취소 당시의 이사를 청산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② 상업등기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상등 5조; 예.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등기소들의 상업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하고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의 경우 별도의 위임이 없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함과 대조를 이룬다. 세무법인은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수법인이므로 유한회사에 관한 상업등기사무처리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관할등기소가 다르다. ③ 민 49조 2항 8호; 비송 62조. ④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8조. 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상업선례 200812-1호).

【문39】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 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여야 할 곳에 편철한다.
-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 ① 대결 2008. 12. 15. 2007마1154.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잘못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각하 사유(관할 위반, 이중 등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상등 3조 2항. ④ 등기예규 1642호 6조 1항. ⑤ 상등 27조.

【문40】 사채권자집회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사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상 491조 2항. ② 사채에 관한 사건은 모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09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은 맞지만, ‘합의부’ 관할이라는 점에서 ‘지방법원 관할’로 쓰여진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96조). ④ 비송 113조 2항, 78조. ⑤ 사채에 관한 사건은 직접 공익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참여를 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 1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비송 116조; 검사의 불참여).

【문41】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을 설치한 때부터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본점·지점 공동등기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만 하여야 한다.
- ④ 본점·지점 공동등기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 ⑤ 본점·지점 공동등기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라도 당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 ① 상등 57조. ② 상 317조 1항, 181조 1항, 317조 4항, 181조 2항. ③ 본지점 공동등기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 24조 2항 2호; 상업선례 1-126). ④ 상등규 61조 1항 1호. ⑤ 상등 25조 3항 2호.

【문42】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 ③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 ① 상 438조 1항, 2항. ② 상 440조; 상업선례 1-196, 1-199. ③ 상업선례 201207-1. ④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감소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상 439조 1항).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 439조 2항 단서). 그 외의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상 439조 2항 본문, 232조 1항),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상업선례 1-228).

【문43】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 ②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ى 차단된다.
- ③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법원의 가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상법 제 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 ⑤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비송 20조 2항. ② 비송사건에서는 일단 재판을 한 후라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비송 19조 1항) 원칙적으로 형식적 확정력은 없다. 다만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없거나 즉시항고기간의 도과 또는 항고권의 포기 등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므로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ى 차단된다고 본다. ③ 비송사건 재판의 효력은 고지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이미 재판의 고지가 있는 이상 항고를 하더라도 원재판의 형성력, 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비송 21조). 그러나 개별사건에서 법률이 특별히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되고, 항고법원의 재판의 확정시까지 원재판에 기한 집행은 할 수 없으며 또 원재판에 의한 권리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비송 85조 2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85조 3항). ④ 비송사건절차법 1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항고심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된 1심 결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더라도 마땅히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항고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대결 2007. 3. 29. 2006마724, 대결 1982. 10. 12. 82마523). ⑤ 비송 22조.

【문44】 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점·지점 공동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상등 58조. ② 상등 51조 3항. ③ 상등 66조.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지만(상등규 53조 1항 본문),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신·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일괄신청, 본점에 둔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신청과의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상등규 53조 1항 단서). ⑤ 상등 26조 12호.

【문45】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이므로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 ② 이사회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 ④ 정관으로 자본금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자본금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상업선례 1-191. ② 자본금 전입의 효력발생은, 이사회에서 자본금 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한다(상 461조 3항, 4항). ③④ 상업선례 1-195. ⑤ 상업선례 1-202.

【문46】 비송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③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 ④ 비송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같은 보조참가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 ⑤ 비송사건 재판의 심리에 변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정답] ⑤

[해설]

① 비송 6조 1항 본문. ② 비송 6조 1항 단서. ③ 대결 1990, 12. 7. 90마674, 90마카11. ④ 비송사건절차법은 보조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7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대결 2010. 11. 22. 2010그191). ⑤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므로(비송 17조),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비송사건절차에서 심문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 원칙이다.

【문47】 유한회사와 그登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상 575조. ②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543조 3항, 292조). ③ 상 561조. ④ 상 592조. ⑤ 상업선례 1-283.

【문48】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자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같은 시(市) 내에 동일 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2013. 7. 1. 시행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의 무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고, 당시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자산의 선고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였다(민법 부칙 2조, 3조). 현재 무능력자 등기 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② 상등 47조 2항. ③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8조 1항).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 22조; 상등 29조). ⑤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 11조 1항). 상인에 한하여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 10조). 상인은 개인상인과 회사를 모두 포함하므로 개인상인도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있다.

【문49】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①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비송 117조 1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17조 2항). ② 비송 121조. ③ 비송 125조, 58조. ⑤ 청산인의 선임,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조).

【문50】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 ②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등기할 사항은 변경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
- ⑤ 회사설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범위 제한은 없다.

[정답] ②

[해설]

- ① 상 433조 1항, 434조. ②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할 사항이다(상 317조 3항, 상등 23조 1항). ③ 상등규 128조 2항. ④ 상등규 55조 1항. ⑤ 현행 상법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